

한국 관세청의 기업상담전문관 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Account Management Program in Korea Customs Service

송선욱(Seon-Uk Song)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조교수

목 차

- | | |
|---|---------------------------------|
| I. 서론 | IV. 한국 관세청의 기업상담전문관 제도의
발전방향 |
| II. 미국 관세청의 기업상담관(AM)제도의
도입배경과 운영 현황 | V. 결론 |
| III. 미국 관세청의 기업상담관(AM)에 의한
기업관리 | 참고문헌
Abstract |

Abstract

Under the circumstance of increasing international trade volumes and limitation of customs human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shift the customs' revenue collection activities and audit method from a transaction-based approach to an account-based approach.

Thus, in 1997, U.S. Customs services established the Account Management Program. The Account Management Program is designed to increase importer compliance and improve customer service through one-on-one interaction with business entities and a designated Customs representative(Account Manager).

The Account Management Program is a comprehensive process that includes the following stages and activities ; selection of a potential Account, establishment of the Account, management of the Account.

In 2009, Korea Customs service introduced and executed the Account Management Program.

But owing to its early stages, Korea Customs service does not suggest effectiv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AM program.

So I can propose the following improvements of the Account Management Program in Korea.

Firstly, the Account Managers have to be assigned more traders than AEOs(Authorized Economic Operators).

Secondly, it is necessary that Customs service appoints part-time port Account Managers to help more traders to improve customs compliance.

Thirdly, thought should be given as to Account can be expanded to encompass both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 by providing customs brokers managing their customs business on the behalf of the SME with the Account Managers.

Lastly, Customs service has to establish performance measures and action plan for the Account Management Program.

Key Words : Account manager, Account management, Compliance, Importer Self-Assessment

I. 서 론

관세행정은 무역거래의 간소화를 통한 무역원활화(facilitation)와 9. 11테러 이후 강조되고 있는 국제무역의 안정성 확보, 특히 국제공급망 안전(International supply chain security)성 확보가 세입확보보다는 더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관세행정은 신속한 통관을 통한 대화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과 통관되는 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사회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기업의 법규준수도 제고 및 적정한 세금징수도 관세행정의 중요한 임무이다.

현재 국정통과화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관의 인력과 예산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효과적인 수입물품의 세수관리 및 법규준수도 확보를 위해서는 거래건별 관리보다는 기업(Account) 단위 관리로의 전환 및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도 제고가 필수적이다. 특히,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해 세관과 무역업계의 파트너십 형성이 필요하다.

이에 미국 관세청¹⁾은 관세관련 전문가를 지정된 기업에 할당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도 제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업상담관(Account Manager ; AM) 제도를 1997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미국의 기업상담관은 담당 기업과 일대일 관계를 통해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기업의 법규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 관세청에서도 2009년 8월 20일에 미국의 기업상담관 제도를 벤치마킹한 기업상담전문관 제도를 본격 시행하였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활동과 기업상담전문관 지정이 미미한 상태에 있다.

이에 한국 관세청의 기업상담전문관 제도의 효과적인 발전을 위해서, 도입된 지 10년 이상 된 미국의 기업상담관 제도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관인력의 한계성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효과적인 법규준수도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미국 기업상담관(AM) 제도 분석을 통해 한국 관세청의 기업상담전문관 제도의 효과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관세심사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국 관세청의 기업상담관 제도의 도입배경과 운영현황 그리고 기업상담관에 의한 기업관리 방법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관세청의 기업상담전문관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²⁾

1) 미국 관세청(Customs Services)은 2002년 9.11 테러 이후 2003년 1월 23일 신설된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DHS) 산하에 이민, 검역, 국경순찰 등의 업무를 통합수행한 관세국경보호국(Bureau of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CBP)으로 신설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상담관 제도가 관세청 시절에 도입된 제도이며 연구의 의미 명확화를 위해 CBP를 미 관세청으로 표시하도록 하겠다.

II. 미국 관세청의 기업상담관(AM)제도의 도입배경과 운영 현황

1. 기업상담관(AM) 제도의 도입배경

1) 도입배경

국경통과화물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한된 세관의 인력과 자원으로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이에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세관관리(customs control) 활동이 제시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수입되는 각 선적품을 검사하고 평가하는 거래건별 접근방식(transaction-based approach)보다는 기업단위로 관리하는 기업단위 접근방식(account-based approach)으로의 전환이 제시되었다. 즉, 강제심사에 따른 기업의 불안감 고조 및 심사에 따른 업무 불편과 심사의 효율성 제고 등의 원인으로 기업의 자율적 범규준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세관 통제가 거래단위에서 기업단위(Account)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단위 접근방식의 하나로써 기업관리(Account Management)의 개념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 대형 수입업체의 범규준수도를 확보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1994년에 미국 세관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같은 개념은 대형 수입업체의 내부통제시스템과 범규준수도 관리 등에 집중함으로써 이들 업체의 범규준수도가 더 높이 달성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관과 무역업체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론하에서 개발되었다.³⁾

이러한 기업 관리의 개념은 1997년 미 관세청에서 기업관리 프로그램(Account management Program)으로 구체화되어 도입된다. 기업관리 프로그램은 기업상담관(Account Manager ; AM)이라고 불리우는 특별히 지정된 세관의 대표자와 기업이 일대일 관계를 통해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기업의 범규준수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도입된 기업상담관 제도⁴⁾는 개정교도협약 일반부속서 이행지침(Guideline) 제6장에

2) 미 관세청의 기업상담관 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아직 개별적으로 연구된 것이 없으며 특히 한국 관세청이 2009년 8월에 도입한 기업상담전문관 제도와 연결한 논문은 더더욱 없다. 단지 현재 미국의 관세심사제도와 관련된 연구가 송선욱, “관세심사에 관한 개정교도협약 및 미국 심사제도의 주요내용과 한국 관세심사제도에 대한 시사점”, 「무역학회지」, 제29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4.6., 송선욱, “미국 관세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4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03.12.가 있으며 기타 관세청의 몇몇 간략한 보고서들이 있을 뿐이다.

3) COAC, “COAC Report on Account Based Processing,” 2009.5.7.

4) 기업관리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용어로 오인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기업상담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므로 기업상담관 제도로 표시하도록 한다.

서 세관통제(Customs Control)와 관련한 원칙을 설명한 내용 가운데 자발적 법규준수를 위해 세관과 업계의 상호 협력을 제시하고 있는⁵⁾ 개정교토협약의 세관통제지침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2) 목적

이렇게 도입된 기업상담관 제도의 목적은 무역원활화와 세관과 업계의 효과적 의사소통을 구축하는 기초가 되는 세관과 업계의 협력관계를 설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 관세청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 ; R/M) 접근방식의 초석이 되는 것이다.⁶⁾

보다 구체적으로 기업상담관 제도는 법규를 위반하는 고위험수준의 업체를 선별하여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법규준수도를 향상시키는 목적을 달성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⁷⁾ 또한 합법 무역의 흐름을 지원하면서 미국무역법을 관리, 규제, 집행하기 위해 국경안전과 공급망 청렴도를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무역법규준수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위험관리원칙에 맞게 기업단위의 관리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사실상, 기업상담관 제도의 목적 중 하나는 기업들이 가능한 한 최저의 세관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최고의 법규준수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⁸⁾

2. 기업상담관의 구분 및 운영 현황

1) 기업상담관의 종류

1997년에 미 관세청(Customs Services)은 거래건별 접근방식에서 기업단위 접근방식으로 세입징수활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현업관리처(Office of Field Operations)내에 기업상담관 프로그램을 확립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개별 선적품과 수입거래보다는 총체적으로 그 기업과 그 기업의 활동을 심사함으로써 기업관리와 세입에 대한 법규준수도 개선을 기대하였다.

기업상담관은 두 가지 종류로 구성된다. 첫째, 국제무역처(Office of International Trade)에 소속되어 있는 전담업무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기업상담관(National Account Managers ; NAMs)이 있다. Security and Accountability for Every Port Act of 2006에 따르면, 미 관세청(CBP)은 미 관세청의 국제무역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해 보다 많은 일관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5) WCO, Kyoto Convention General Annex Guidelines, Chapter 6 customs control, 2. Executive summary, 1999.6.

6) U.S. CBP, Account Management Program (www.cbp.gov), 2008.6.26.

7) U.S. Customs Services, Account Management Handbook, 2001.10, p.1-1.

8) Thoma A. Cook-Rennie Alston-Kelly Raia, Mastering Import & Export Management, AMACOM, 2004, p.184.

그리고 미국 국경을 통과하는 합법무역의 흐름을 원활화하기 위해서, 동시에 불공정 무역관행과 불법 기업으로부터 미국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무역처를 설립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제무역처는 미 관세청의 무역정책, 프로그램 개발, 법규준수 조치 기능을 하나의 처(處, Office)로 통합하였다. 국제무역처는 현업관리처와 긴밀하게 일하고 있다.

둘째, 현업관리처에 소속되는 비전임으로 부수업무로서 기업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항구 기업상담관(Port Account Managers ; PAMs)이 있다.⁹⁾ 현업관리처는 화물검사, 관세, 세금, 수수료 징수, 수입항구에서 벌금과 과징금의 평가와 같은 미 관세청의 핵심활동을 관리한다.¹⁰⁾

2) 기업상담관의 운영 현황

미 관세청내의 기업상담관 운영 현황은 2008년 말 기준으로 국가 기업상담관(NAMs)이 40명 활동하고 있으며 비전임의 항구 기업상담관(PAMs)을 약 400명 두고 있으며 국가 기업상담관을 관리, 감독하는 국제무역처 본부에 있는 감독 국가 기업상담관(Supervisory National Account Manager)¹¹⁾ 4명을 두고 있다.

2008년 회계연도¹²⁾ 초에 미 관세청은 596개의 개별 기업을 관리하는 31명의 국가 기업상담관만을 두었다. 이 같은 작은 규모의 기업상담관만으로는 약 862,000개의 수입업자의 필요를 충족하기에는 확실히 불충분하였다. 사실상 그 숫자는 신고되는 모든 수입신고(entry)의 반을 대표하는 그리고 모든 수입금액의 73%를 대표하는 상위 3,000개의 수입업자를 커버하기에 불충분한 것이다. 또한 상위 30개 관세사무소(broker account)만이 국가 기업상담관이 할당되어 있다. 이 같은 기업상담관의 규모는 1997년 1,000개의 기업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 기업상담관을 늘리기로 계획한 이래로 10년이 지났으나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이고 현실성 있게 만들기에는 부족한 규모이다.¹³⁾

또한 본부에서 1명의 국제무역처 관리자가 22개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 기업상담관을 감독하고 1,071개 기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파트타임 수입 전문가들의 노력을 감독하고 또한 기업 절차에 대한 변화의 노력을 감시 관리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였다. 그 같은 폭넓은

9) 미국 관세청(CBP ;관세국경보호국)의 현재 조직은 5개의 관세청장 참모부서와 13개 업무부서, 그리고 1개의 법률담당자문관을 두고 있다.(U.S. CBP, CBP organization chart, 2009.8.19.(www.customs.gov))

10) DHS OIG, "Management of CBP Revenue Analysis Functions," 2009.2, p.2.

11) 감독 국가 기업상담관은 2008년 말에 새롭게 4명이 선발되었으며 이전에는 국제무역처 관리자 1명이 모든 기업상담관 프로그램을 관리 감독할 책임을 부담하였다.(DHS OIG, "Management of CBP Revenue Analysis Functions," 2009.2, p.4.)

12) 미국의 회계연도(Fiscal Year ; FY)는 전년도 10월 1일에서 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이다. 즉, 2008 FY는 2007년 10월 1일에서 2008년 9월 30일까지이다.

13) COAC, "COAC Report on Account Based Processing," 2009.5.7.

책임을 가진 1명의 개인이 총체적으로 기업상담관 프로그램의 진전을 평가하고 감시 관리하는데 필요한 방향을 제공할 수는 없다.¹⁴⁾ 그리고 약 400여명의 비전임의 항구 기업상담관은 명목상의 기업상담관으로 할당되어 있을 뿐 실제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관세청은 기업상담관 제도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8년 12월에 추가적으로 9명의 국가 기업상담관을 채용하였으며 4명의 새로운 감독 국가 기업상담관을 선발하였다.

미 관세청은 1997년 최초 1,000개 기업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 기업상담관을 늘리고 있었으나 미 관세청은 이 같은 목표를 재평가하였으며 모든 수입가액의 약 65%를 포괄하는 기업 관리가 자원의 가장 효과적인 사용이 될 것이라고 결정했다. 2007년 회계연도 동안 국가 기업상담관은 수입가액의 48%를 담당했으며 그들 기업 전체는 99% 법규준수를 기록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관리된 기업들은 전체 세입 격차의 4%만을 차지했다.¹⁵⁾

〈표 2-1〉 연도별 기업상담관의 관리를 받은 기업

회계연도 (Fiscal Year)	기업상담관의 관리를 받은 기업
1997년(AM 도입시)	1,000개 기업(최초 출범 당시 계획 수치)
1999	700개 기업
2001	1,119개 기업(275개 기업(NAMs), 844개 기업(PAMs))
2002	1,108개 기업(275개 기업(NAMs), 833개 기업(PAMs))
2004	1,700개 기업(수입업체 1,490개, 관세사업체 210개)
2007	수입금액의 48%(실제 관리 대상 수치)
2008	수입금액의 65%(새롭게 수정된 관리 대상 목표치)

자료 : 미 관세청, 해당 연도 Performance and annual report

미 관세청은 국가 기업상담관을 400명까지 늘려 지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예산이나 세계경제상황하에서는 달성되기 어려운 계획이 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수입가액의 약 65%를 포괄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 기업상담관을 지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자원 배분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향후 국가 기업상담관 지정이 늘어날 전망에 있다.

14) DHS OIG, "Management of CBP Revenue Analysis Functions," 2009.2, p.2.

15) U.S. CBP, "Response to the Office of Inspector General Draft Letter Report Entitled, "Management of CBP Revenue Analysis Functions," 2009.1.6.

〈표 2-2〉 AM이 있는 기업과 AM이 없는 기업의 법규준수도 비교

	1998 FY	1999 FY	2000 FY	2001 FY
AM이 있는 기업	약 90.8%	약 91.8%,	약 92.5%	약 93.4%
AM이 없는 기업	약 88.4%	약 88.9%	약 88.9%	약 89.3%

자료 : U.S. Customs Service, "ISA Program, Managing compliance in an Era of Unprecedented Trade Growth," 2003.

3. 기업상담관(AM)의 역할

1) 기업상담관의 자격

기업상담관은 폭넓고 다양한 주제, 즉, 평가, 내부통제 개선 또는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¹⁶⁾와 같은 다른 미 관세청 프로그램의 가입과 같은 주제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경험있는 미 관세청 직원이어야 한다. 게다가, 기업상담관은 문제가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수준에서 미 관세청의 주제별 문제에 관한 전문가와 접촉하게 된다.

기업상담관은 그들이 할당받은 기업 부분에서 더 많은 전문적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같은 가치를 인정한다면 국가 기업상담관(NAMs)의 최초 임명(assignment)은 이전의 경험을 기초로하여 세워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의약품에 할당된 국가 기업상담관은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USDA(U.S. Department of Agriculture) 문제에 친숙하다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의류에 할당된 국가 기업상담관은 쿼터 등과 관련된 문제에 친숙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매업자에 할당된 국가 기업상담관은 소매업자가 관여된 다양한 범주에서 폭넓은 지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¹⁷⁾

16) 1984년에 개발된 Automated Commercial System(ACS)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의 추적, 관리, 처리를 위해 미국 세관에 의해 사용되는 시스템으로 급증하는 무역과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ACS를 대체하는 시스템으로 ACE가 개발되었다. ACE를 통한 현대화의 노력은 2001년 8월 최초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2002년 3월에 세관은 ACE의 기본요소들을 구축하고 ACE의 지원개발자들의 노력을 통해 세관은 2002년 10월에 하부구조, 웹인터페이스, 구좌관리 기능을 구축하게 되었다. ACE는 국경보안을 강화하면서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해 CBP에 의해 개발된 상업적 무역 처리 시스템이다. 정확한 정보, 기술, 예측의 제공을 통해 ACE는 무역화물관리의 중요한 시스템이며 화물이 테러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U.S.CBP, ACE at a glance fact sheet, 2009.10.7.; 엄광렬·송선욱, "선진국과 한국의 전자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2003.12, p.186.)

17) COAC, "COAC Report on Account Based Processing," 2009.5.7.

2) 기업상담관의 책임과 역할

일반적으로 기업상담관은 기업 법규준수도의 극대화, 기업관리 및 심사과정에서 국가 통일성의 보장, 자율법규준수의 확대, 기업과 미 관세청과의 의사소통의 개선, 그리고 기업관리의 효율성 증대에 대한 책임이 있다.

지정된 기업들이 최고의 법규준수를 유지 또는 달성할 수 있도록 일해야 할 책임을 가진 기업상담관은 세관내에서 기업들과의 주요 접촉점에 있으며 다음의 주요 책임들을 포함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업의 지식을 발전시키고 유지시켜야 한다. 기업과 산업의 모니터링을 통해 현재 지식을 유지하고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프로그램과 기업에 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자료 수집을 통해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의사소통의 원활화 및 조정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즉, 기업과 세관 사이 및 필요시 다른 정부기관과의 조정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셋째, 기업정보의 분석, 법규준수 위반의 유형 및 법규준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이슈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상담관은 기업의 저위험 및 고위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정밀 조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점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문제의 원인을 결정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확인하고, 법규준수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계획을 개발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기업과 함께 일해야 한다. 다섯째, 필요한 법규준수 개선 및 향상과 관련하여 이해를 돕고 협력하기 위하여 기업과 함께 일해야 한다. 여섯째, 기업의 실행계획에 대한 기업들의 진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다른 세관 분야로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¹⁸⁾

향후 국가 기업상담관은 미 관세청과 무역업체 사이의 모든 거래와 보안에 대한 상호작용을 위한 협력적 책임을 가진 주요한 미 관세청과의 접촉과 상호의사소통 포인트로 역할을 하기 위해 상위 3,000대 수입업자와 상위 1,000대 관세사 기업을 관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COAC(Commercial Operations Advisory Committee ; 상업 운영에 관한 자문위원회)¹⁹⁾는 지적하고 있다.²⁰⁾

18) U.S. Customs Services, Account Management Handbook, 2001.10, p.2-2.

19) 미 관세청과 관련된 국토안보부(DHS) 기능의 상업운영에 관한 자문위원회(COAC)

20) COAC, "COAC Report on Account Based Processing," 2009.5.7.

Ⅲ. 미국 관세청의 기업상담관(AM)에 의한 기업관리

1. 기업상담관 배정 기업(Account)의 선정

1) 잠재 기업(a potential port-level account)의 선별

기업상담관이 지정될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서 우선 잠재 기업에 대한 선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때 일반적인 위험관리과정, 즉, 1단계 자료와 정보의 수집, 2단계 위험분석 및 평가, 3단계 처방조치 시행, 4단계 후속조치 및 피드백의 과정이 잠재 기업의 선별 및 기업관리시 적용된다.²¹⁾

잠재기업을 선별하기 위해서 첫째, 각 세관의 기업상담관²²⁾이 잠재 기업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게 된다. 자료 수집은 잠재 기업의 법규준수와 세관 활동이 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과거의 이력을 얻는데 중요하다. 정보는 세관의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얻어지며 모든 유용한 기초정보는 잠재 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기업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되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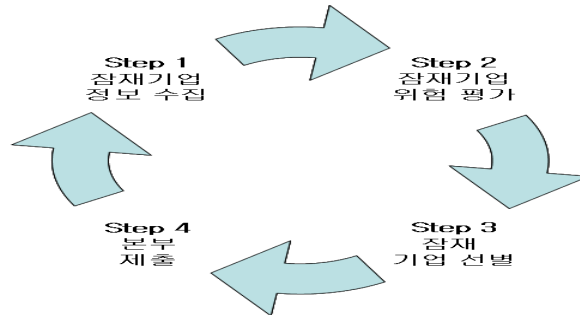
둘째,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임시로 선별된 기업에 대한 위험분석 및 평가가 이루어진다. 임시로 선별된 기업들에 대해서 본부 위험관리팀의 심사 및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철저한 분석 및 위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험 분석 및 평가시에 주요한 이슈 불일치 및 주요한 거래 불일치, 법규준수 모형 및 무역 법규준수 측정 점검, 상위 수입자 목록, 통계적 위험평가 등의 통일된 표준을 이용하여 평가하게 된다.

셋째, 선별된 기업을 본청 기업상담팀(HQ AM Team)으로 제출하게 된다. 세관이 특정 기업을 잠재 기업으로 선별한 후 선별된 기업은 그 기업과 관계된 모든 정보와 함께 본청 기업상담팀의 선별업무를 담당하는 기업관리조정자에게 전달된다. 본청 기업상담팀은 기업선별을 조정하고 정밀조사 과정을 시작하게 된다.²³⁾

21) U.S. Customs Services, Account Management Handbook, 2001.10, p.1-2.

22) 기업상담관 또는 기업상담팀(Account Management Team)이 될 수 있다. 이때 기업상담팀의 경우 기업상담관과 수입전문가(Import Specialists)가 포함된다.

23) U.S. Customs Services, Account Management Handbook, 2001.10, pp.3-3 ~ 3-5.



[그림 3-1] 기업 선별 과정

2) 기업(account) 선정

기업상담관 프로그램을 위해 기업이 승인되었다는 통지를 수령하였을 때 기업은 비로소 공식적으로 선정되게 되는 것이다. 기업선정에는 기업을 정의하는 것과 의사소통을 확립하는 것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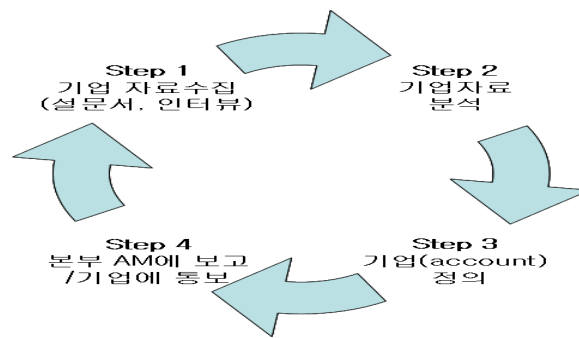
기업에 대한 정의를 생성하기 위해서 기업상담관은 업체명, 일반적으로 쓰이는 주소와 위치, 일반 채권 번호(common bond numbers), 기업(account)을 구성하는 모든 IR(Importer Record) 번호²⁴⁾들 등 기업에 대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축적해야 한다.

또한 기업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설정하는 것은 기업관리 프로그램의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기업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첫째, 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기 위해, 기업상담관은 기업 선별과 승인으로부터 30일 내에 본 제도에 대한 소개서를 업체에 발송한다. 둘째, 기업상담관은 소개서를 발송한 후 3주 내에 업체에 전화를 하여 사후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전화를 하는 목적은 기업상담관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무역법규준수 과정과 기업관리 개념을 전달할 회의의 일정을 잡기 위함이다. 셋째, 거부적인 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사후조치를 취하게 된다. 즉, 만약 기업이 참여하기를 꺼려한다면, 기업상담관은 기업관리 프로그램이 임의적인 것이 아니며 업체는 세관 목적을 위해 기업상담관이 지정된 기업(account)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기업상담관은 세관의 무역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한 기업 단위의 접근방식에 대해 설명하는 사후의 설명서를 보낼 수도 있다. 넷째, 기업의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기업 설문서를 받게 된다. 설문서의 내용은 일반적인 조직의 정보, 내부통제, 관세평가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 특정한 기업에 맞추어져서 구성되어야 한다. 이 설문서는 최초 회의 전에 기업에게 보내어 지거나 또는 회의 때 제공될 수 있다. 응답되지 않았

24) 19 CFR 24.5 Filing Identification number, CBP Form 5106 Importer ID Input Record 참조

거나, 질의되지 않았거나, 불충분한 질의는 인터뷰 동안에 보충될 수 있다. 다섯째,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추가적인 기업 정보를 얻기 위해 기업상담관과 기업이 함께 회의를 갖게 된다. 기업상담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전달을 위해 기업상담관은 무역법규준수 과정과 기업 관리 개념을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정보 확보를 위해 최초의 회의에서 기업 정의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모아야 한다.²⁵⁾

기업(Account)은 수입업체나 관세사업체일 수 있다. 이들은 미 관세청으로의 잠재적 위험과 가치를 기초로하여 미 관세청의 본청 기업관리 부서에 의해서 선별된다. ISA(Importer Self-Assessment)²⁶⁾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수입업자는 추가적 이익으로써 지정된 기업상담관을 갖게 된다.²⁷⁾



[그림 3-2] 기업 선정

2. 기업상담관에 의한 기업의 관리

1) 기업 프로파일 개발(Developing an Account Profile)

기업 정의가 완결되었다면, 기업상담관은 기업(account) 정의 위에 기업 프로파일을 개발하

25) U.S. Customs Services, Account Management Handbook, 2001.10, pp.3-6 ~ 3-10.

26) ISA는 업체의 자율심사를 통해 평소에 관리를 함으로써 세관의 심사업무량과 업체의 관세심사관련 비용 절감과 함께 미 세관이 2002년 4월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 對테러 세관-기업 파트너쉽)의 시행을 보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프로그램이다.

ISA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C-TPAT의 일원이며 ISA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전 2년간의 수입경험을 가진 미국에 주소를 둔 수입업자로 자율심사양해각서(ISA MOU)와 자율심사 질문서(ISA Questionnaire)를 작성하고 적용가능한 모든 세관 규정에 따를 것에 동의해야 한다. 또한 세관 업무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영업기록체제를 유지하고 회사에 대한 조사 완료 후 세관에 적절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입업자는 양해각서와 ISA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에 대해 계속적으로 충족됨을 확인하여 매년 세관에 서면통지를 해야 한다. (송선옥, “관세심사에 관한 개정교토협약 및 미국 심사제도의 주요내용과 한국 관세심사제도에 대한 시사점”, 「무역학회지」, 제29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4.6, p.198.)

27) U.S. CBP, Account Management Program (www.cbp.gov), 2008.6.26.

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기업 프로파일은 기업상담관이 중요한 법규준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그 초점을 좁힐 수 있도록 해 주는 핵심적인 서류이다.

기업 프로파일의 내용은 발견사항, 결론, 그리고 권고 뿐만 아니라 자료 분석의 결과와 원 데이터(raw data)와의 집합체이다. 여기에는 기업의 법인 구조, 장소(locations), 그리고 다른 업체에 대한 관계, 수입내역의 상세한 분석, 산업 표준(industry norms)과의 비교, 가능한 법규준수 문제의 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 같은 기업 프로파일은 기업 선별과 정의를 위해 모아진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상담관이 작성하고 기업관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게 된다. 기업 프로파일을 통해 기업상담관은 기업 법규준수도의 평가, 기업 내부통제와 품목분류 시스템의 평가, 중요한 법규준수와 과정상의 문제점 확인, 수입경향의 변화에 따른 잠재적인 법위반 가능성의 확인 등의 분석을 위한 핵심요소로 활용하게 된다.

2) 기업 평가(Evaluating the Account)

기업상담관은 기업의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는 활동(corrective actions)을 개발하는 것을 돕기 위해 중요한 위험영역 즉, 법규준수 그리고/또는 절차 문제를 확인하는 기업 평가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기업 프로파일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는 이러한 평가의 기초가 된다.

기업상담관은 이러한 평가가 조사나 심사의 필요성을 결정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면서, 평가의 목적을 기업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심각한 법규불준수나 사기의 혐의가 발견되면, 강제법규준수 평가팀(EET)²⁸에 회부해야 한다.

기업평가시 기업상담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하게 된다. 첫째, 기업의 불일치와 법규불준수의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 프로파일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수행한다. 둘째, 기업의 내부통제와 품목분류 시스템을 평가한다. 이는 기업 활동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재무보고가 믿을 만한지, 그리고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합리적인 절차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셋째, 법규준수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나 패턴 뿐만 아니라 중요한 법규준수와 절차 문제를 확인하게 된다. 넷째, 확인된 문제 영역의 범위를 결정하고 평가 결과물을 기업과 토론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내부통제 및 품목분류 시스템 평가시 기업상담관은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게 된다.

업체가 구속력 있는 지침과 내부의 권고 결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의 품목분류가

28) 강제법규준수평가팀(EETs : Enforcement Evaluation Teams)은 위반사항과 규정불일치가 탐지되었을 때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책임이 있는 기업관리를 위한 기타 세관조직 가운데 하나이다.

어떤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기업에게 자문해 주게 된다. 또한 상품의 품목분류를 위해서 기업이 누구에게 의존하는가에 대한 조사, 품목분류 과정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기업이 관세사에게 제공하는 품목분류 데이터베이스 등과 같은 정보에 대한 검토, 업체가 관세 환급을 요구하였는지 조사, 그리고 그 기업이 환급을 입증하는 서류를 보관하는지 확인, 모든 부과 가능한 가격이 세관에 신고 되었는지 그리고 세관에 보고된 가격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업체가 어떤 특별무역프로그램 즉, 예를 들어, GSP, NAFTA를 사용하는지 조사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적절한 입증서류를 보관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관심영역이 있는지 집중심사(Focused Assessment ; FA)²⁹⁾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확보하고 업체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평가한다. 이 영역에서 기업상담관은 기업심사(Regulatory Auditors)팀에 도움 요청을 고려할 수 있다.

3) 법규준수개선을 위한 실행계획의 개발(Developing Action Plans to Improve Compliance)

기업의 실행 계획은 법규준수 개선을 위해 세관과 기업에 의해 합의되고 확인된 위험과 해결책에 대한 윤곽을 그리는 것이다. 실행 계획은 법규준수를 유지하고 달성함에 있어서 기업의 절차를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핵심 도구가 된다. 실행계획에는 목표들, 그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들, 책임, 예정된 날짜에 대해 간결하지만 명확하게 특정해야 한다.

기업상담관이 실행 계획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과 기업상담관 양쪽 모두는 문제의 원인 결정, 효과적인 해결방법 확인, 그리고 우선순위와 시간계획의 설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기업이 권고된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거절된 항목을 거절이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실행계획에 나열하여야 한다.

만약 기업상담관이 그 계획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기업(account)으로서 그 업체를 재평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실행 계획의 최종판(版:version)은 기업상담관과 기업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기업상담관은 실행 계획의 복사본을 관련된 수입신고세관, 본청 기업상담팀 등에게 보내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9) FA 프로그램은 1995년부터 도입된 CA(Compliance Assessment)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로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기초로 기업의 내부통제관리와 위험도가 높은 부분을 집중관리하기 위해 2001년 10월에 도입된 미국 관세청의 심사 제도이다.(송선옥, “미국 관세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4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03.12, p.59.)

4)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Monitoring the Account)

기업 실행 계획이 승인되었으면, 그것은 이행되어야 하고 실행 계획이 이행된 이후에는 기업상담관은 계획된 법규준수 개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업을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다. 반면, 기업은 문제 영역이 해결되는 대로 기업상담관에게 계획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진행이 추적되고 보고되는 대로, 그 결과는 기업과 공유함으로써 그리고 세관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용가능하게 함으로써 위험관리 사이클에 다시 투입하게 된다. 기업상담관은 데이터와 정보의 수집, 데이터 분석과 위험 평가, 조치 처방, 그리고 진행을 추적, 보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계속 진행하게 된다.

5) 진행 사항 보고(Reporting Progress)

기업 관리의 진행과정은 분기별 또는 월별 보고서의 형태로 본청에 보고되고 법규준수측정(Compliance Measures)³⁰⁾을, 서류검토 불일치 명세서 등을 포함한 기업 법규준수 보고서는 기업에게 보고되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보고서는 최소한 분기별로 발행되어야 하는데 만약 기업상담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더 자주 발행될 수도 있다.

6) 법규준수 기업의 유지(Maintaining Compliance Accounts)

기업이 법규준수도가 매우 높아진 이후에는 유지모드(Maintenance Mode)로 옮겨가게 된다. 유지 모드는 매년의 무역 법규준수와 집행 전략(the annual Trade Compliance and Enforcement Strategy : TCES)에서 언급된 산업의 법규준수율에 도달하였거나 능가하였고, 그리고 모든 조치 항목을 성공적으로 완성한 기업에 의하여 얻어진 지위로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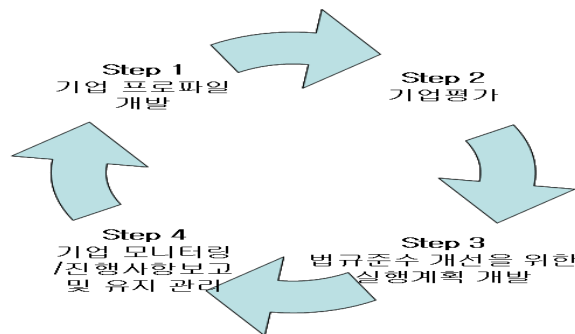
유지 모드에서의 기업은 산업 표준내의 법규준수율을 유지하도록 모니터링 되며 이러한 업체들은 그들의 법규준수가 계속되도록 주기적으로 재평가한다.

기업이 유지 모드에 도달하면, 기업상담관은 단지 주기적으로만 또는 필요할 때만 기업과 연락하게 된다.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은 그들에게 관심사항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세관 프로

30) 법규준수도 측정(Compliance Measurement) - 거래를 통해 법규준수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물품을 직접 검사하거나 신고된 관세액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HTS(Harmonized Tariff Schedule ; 관세율표) 4 단위 분류를 기준으로 검사를 하여 법규준수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법규준수도 측정의 결과, 세관은 주요 산업분야와 주요 수입업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세액징수와 관세법 및 관련법의 시행을 평가할 수 있다. 수입업자들이 법규준수를 개선하고, 세관이 법규준수개선 전략을 개발하고 이행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U.S. Customs Service, Trade Compliance Risk Management Process, Glossary of Terms)

그랜, 일정이 잡힌 회의 또는 세미나 등에 관하여 통지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하게 된다.

한편 기업상담관은 기업체의 변화에 대한 확인과 대응을 해야 하는데 특히 기업상담관은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상의 변화, 즉, 합작투자, 합병, 분리, 해체, 분리신설, 인수, 연합, 해산 등의 기업변화를 확인하여 기업을 재할당 또는 배제하게 된다.³¹⁾



[그림 3-3] 기업 관리

3. 기업상담관 제도 운영의 이익 및 문제점

1) 기업상담관 제도 운영의 이익

(1) 관세청의 이익

기업상담관 제도는 미 관세청의 제한된 자원과 예산하에서 수입신고 물품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상위 수입업체와 관세사업체에 대해 미 관세청의 법규준수도 관련 전문가인 기업상담관을 지정하여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고 누수되는 세입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미 관세청 입장에서는 제한된 자원과 예산하에서 효과적으로 수입업체의 법규준수도를 제고시킬 수 있으며 또한 효과적인 세입 확보를 할 수 있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세관과 무역업계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세관에서는 무역업계의 무역관행 변화를 파악하고 세관통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는 부수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

(2) 지정 기업의 혜택

기업상담관의 지정을 받아 관리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첫째, 세관 검사와 관련된 기업 자료에 대한 접근이 확대된다. 둘째, 세관 프로그램과 정책

31) U.S. Customs Services, Account Management Handbook, 2001.10, pp.3-11 ~ 3-21.

변화에 대해 사전 통지를 받은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셋째, 물품의 평가와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전문적 조언을 제공받을 수 있다. 넷째, 어떤 문제에 대해 신속한 방식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관의 다양한 수준의 주요 주제 전문가들과 기업상담관이 자주 접촉함에 따라 효과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다섯째, 모든 세관 관련 문제에 대한 기업의 주요한 접촉점(contact point)로서 기업상담관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적 관심은 주요하고 시간에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에게 가능한 한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³²⁾

2) 기업상담관 제도 운영의 문제점

1997년부터 10년 이상 운영되어 온 미국의 기업상담관 제도는 일정한 성과도 거두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기업상담관 수가 너무 제한적이다. 2008 회계연도 초에 미 관세청은 31명의 국가 기업상담관을 두고 있었으며 이는 전체 수입업체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규모이다. 기업상담관의 조력을 통한 수입업체의 법규준수도 제고라는 기업상담관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이 같은 규모의 기업상담관 수는 문제가 있으므로 미 관세청도 전체 수입금액의 65%를 포괄할 수 있는 규모로 국가 기업상담관의 수를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둘째, 비전임 항구 기업상담관의 실제적 역할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미국은 약 400여명의 비 전임의 항구 기업상담관을 지정하여 관할 항구에 거래하고 있는 수입업체에 할당하고 있으나 이들의 역할이 미미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수입업체의 법규준수도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들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상담관 프로그램이 없다. 대기업 위주의 기업상담관 제도 운영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을 불러일으키며 또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 내부통제시스템 등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고위험의 중소기업에 효과적인 관리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넷째, 기업상담관 제도에 대한 성과 측정 및 구체적인 향후 실행계획이 미흡하였다. 10년 이상 운영해 오고 있으나 연차별 성과 측정에 따른 문제점 확인 및 개선 활동이 부족하였으며 구체적인 향후 실행계획이 명확히 수립되지 못하여서 기업상담관 제도가 제대로 발전, 정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최근 미 관세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평가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32) U.S. CBP, Account Management Program (www.cbp.gov), 2008.6.26.

IV. 한국 관세청의 기업상담전문관 제도의 발전방향

1. 현행 한국의 기업상담전문관 제도의 운영 현황

1) 현행 관세심사에서 기업상담전문관 제도

한국 관세청의 현행 심사 운영체계는 세액심사와 환급심사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세액심사는 건별심사, 기획심사, 종합심사, 자율심사로 다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건별심사와 기획심사는 건별, 품목별 심사이며 종합심사와 자율심사는 업체별 심사로 진행된다.

현행 관세심사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목적이나 착안사항 면에서 대부분의 심사방법들이 대동소이한 상황이다. 또한 중복심사에 따른 기업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04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자율심사는 2007년 기준으로 총 252개 업체가 지정 운영되면서 자율심사업체의 자체 통제시스템 평가 체제 미흡으로 동 업체들의 자율심사에 대한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으며 세관직원들도 실적 달성을 위해 자율심사업체의 법규준수도 향상보다 세액정정 대상 발굴에 중점을 두는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³³⁾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청은 수입건별 중심관리에서 기업별 관리로, 기업과의 관계에서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파트너십 관계로, 강제적 법규준수 중심 즉, 추징위주의 심사에서 자율적 법규준수 중심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의 선상에서 미국의 기업상담관 제도를 벤치마킹한 기업상담전문관 제도 도입은 세액심사에 치중함에 따른 통관적법성 확보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한된 심사인력을 보완하여 업계와 세관의 상호 작용을 통한 자율적 법규준수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기업 친화적(business friendly) 정책방향과도 일맥상통하게 된다.

2) 현행 기업상담전문관 제도의 도입 현황

미국 기업상담관(AM)제도를 벤치마킹한 기업상담전문관 제도를 한국 관세청은 2009년 8월 20일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기업상담전문관은 종합인증우수업체(AEO)³⁴⁾의 내부통제시스템을

33) 관세청, 내부자료, 2008

34)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우수업체) 제도는 국제 교역의 안전성 측면에서 세관의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무역공급망 주체들을 AEO로 인증하여 물품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2006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세부지침을 채택한 이후 EU,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 추진 중에 있다. AEO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송선욱, “국경안전성 강화를 위한 승인된 운영인(AEO) 프로그램의 적용”, 「관세학회지」, 제8권 2호, 2007, “관세법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도의 효과적 운영 방향”, 「관세학회지」, 제9권 3호, 2008.을 참조하기 바람.

개선하고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업체 관리책임자의 협력파트너로 지정된 관세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³⁵⁾

기업상담전문관은 기업의 관세행정과 관련한 법규준수도, 물품안전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처방해 주는 무역기업의 주치의(主治醫)로서 활동하게 된다. 또한 그밖에 업체의 자율적 법규준수에 유용한 각종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기업의 세관측 협력파트너로서 관세행정상의 문의에 대한 자문과 각종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업상담전문관은 종합인증우수업체(AEO)에 대해 업체별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형식으로 지정, 운영하며 관세청은 우선 삼성전자(주) 등 9개 AEO 업체³⁶⁾에 대해 세관의 경험이 풍부한 우수 전문가 7명을 지정하였다. 향후 AEO 인증심사를 거쳐 공인되는 AEO 증가에 맞추어 기업상담전문관을 추가 지정하여 서비스제공의 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³⁷⁾

2. 한국 관세청의 기업상담전문관 제도의 발전방향

2009년 8월 20일부터 도입한 기업상담전문관 제도는 현재 초기 단계로 그 구체적인 역할과 성과를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상담전문관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1) 기업상담전문관 지정업체의 확대

기업상담전문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한 법규준수도 제고에 있으므로 이러한 효과를 보다 실질적으로 획득하기 위해서 현행의 AEO 인증업체로 국한된 지정방식으로는 미흡하며 기업상담전문관의 지원을 받는 업체가 너무 제한적이다.

미국의 경우 모든 수입가액의 65%를 포괄하는 기업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세관 자원 사용으로 평가하고 그 수준에 맞추어 기업상담관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ISA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수입업자가 기업상담관의 지정을 받아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35)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9-11호, 제정 2009.4.15.], 제2조 4호.

36) 현재까지의 시범사업에 따른 인증기업 - 삼성전자, 엔코테크놀로지코리아, 코오롱유화, 다산네트웍스, 쉹코리아, 삼성전자로지텍, 조양국제물류, 고려해운, 부산신항만, 하이닉스반도체, 하나로티엔에스, 삼원산업사 등 12개 기업 (2009년 4월 15일 본격 시행)

37) 관세청, “무역기업의 주치의, 기업상담전문관 제도 본격 시행”, 관세청 보도자료, 2009.8.20.

따라서 한국 관세청도 기업상담전문관 지정을 AEO 인증업체로 제한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종합심사대상업체나 자율심사업체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현행 종합심사는 수입규모 1,000대 법인 중 고위험업체를 선정하여 본부세관 심사관실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들 종합심사 대상 업체 중에서 기업규모가 큰 업체 및 위험도가 높은 기업을 우선 지정 대상으로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는 최근 2년간 연평균 납세액 10억원 이상 업체, 최근 2년간 법규준수도 80점 이상 업체, 최근 2년간 관세법위반 및 체납없는 업체,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 등의 지정요건을 가진 자율심사업체에 대해서 기업규모에 따라 우선 지정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별 규모에 따라 기업상담전문관이나 기업상담전문팀을 지정하여 법규준수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종합심사대상업체를 위한 기업상담전문관은 관세청의 종합심사부서에 소속되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비 전임 기업상담전문관 지정

기업상담전문관 제도는 법규를 위반하는 고위험수준의 업체를 선별하여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법규준수를 향상시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건별심사나 기획심사 등의 자료를 통해 법규준수가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비 전임의 기업상담전문관을 지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국가 기업상담관(NAMs)외에 다수의 비 전임의 항구 기업상담관(PAMs)을 두어 기업의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해 조력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상담전문관 제도는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다 많은 업체들이 세관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국가 전체적으로 법규준수도 제고와 효율적 세수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세관의 심사과에서 일정 직원을 비 전임 기업상담전문관으로 지정하고 이들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여 업체들의 법규준수도 제고에 조력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본부세관의 기획심사과에 총괄 비 전임 기업상담전문관을 두고 본부세관 산하 일선세관에는 납세심사과에 비 전임 기업상담전문팀을 두어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본부세관 기획심사과의 총괄 비 전임 기업상담전문관은 관할 세관의 기업상담전문팀을 지휘, 감독하고 기업상담전문관이 배치되어 있는 본청 종합심사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창구로서의 역할 등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그리고 일선 세관 납세심사과

의 비 전임 기업상담전문팀은 관할 기업체 중 고위험 업체를 선별하여 이들 업체에 대해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자문, 기업프로파일링 정보 수집 및 관리 역할 수행, 문제점 개선실행 계획 수립의 조력과 그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한편 비 전임 기업상담전문팀의 인원은 관할 기업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전체 세관인력과 조화를 고려하여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3) 관세사를 활용한 중소기업 법규준수도 제고 지원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규준수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는 중소기업을 위해 이들을 위해 관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세사를 위한 기업상담전문관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997년부터 10년 이상 기업상담관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는 미국의 경우 기업단위 절차에 대한 COAC의 2009년 5월 7일의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관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대기업 위주의 기업상담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통관 대리 등 관세에 관한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는 관세사에 대해 기업상담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세관업무를 관리하는 자격있는 관세사를 위해 기업상담관을 지정함으로써 기업 단위 관리가 중소기업 모두를 포괄하기 위해 확장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다수의 중소기업을 위해 관세관련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는 관세사에 대해 기업상담전문관을 지정하는 것은 제한된 세관 인력과 자원하에서 수입신고 상위 업체를 중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법규준수도 제고 및 세입징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기업상담관 제도 본연의 취지를 퇴색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4) 기업상담전문관 제도의 효과 분석 및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기업상담전문관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분석을 지속적으로 행해야 한다. 기업상담전문관 제도의 운영 목표인 해당 기업의 법규준수도 제도 실적,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효과, 그리고 전체 국가적 법규준수도 개선 효과 및 세입 누수 방지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 기업상담관 제도하에서 건별기준에서 기업별 기준으로의 변화에 따른 진전이나 이 같은 변화의 영향이 세입 격차를 줄였는지, 또한 기업상담관 제도 운영을 위한 투자가

관리업체의 법규준수율 개선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를 본 제도 초기에는 실시하지 않아서 기업상담관 제도의 개선 방향 등의 제시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현재 기업상담관에 의해 행해지는 업무를 평가하기 위해 기업상담관 제도 분기 보고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³⁸⁾

한편 미국의 경우 10년 이상 운영해 오고 있으나 기업상담관 제도에 대한 성과 측정 및 향후 실행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 운영되지 못한 결과 1997년 도입 당시 1,000개의 기업을 관리하도록 국가 기업상담관(NAMs)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2008년 회계연도 초에 미 관세청은 596개의 개별 기업을 관리하는 단지 31명의 국가 기업상담관을 가지고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전히 일하고 있다.³⁹⁾

따라서 한국 관세청도 기업상담전문관 제도 도입 초기부터 구체적인 향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즉, 기업상담전문관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기업 및 수입물량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 법규준수도 개선 및 세입 누수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획득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제도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현행 전문관 역할 재조정을 통한 기업상담전문관으로의 활용

현행 관세청의 전문관제도는 관세공무원의 적성에 맞는 직무수행과 적절한 이동, 배치, 교육훈련을 통해 자기발전 욕구를 충족하고 조직에 필요한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관세청의 경력개발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제도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문관의 역할을 재조정하여 기업상담전문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현행 감정, 심사, 조사 전문관에서 감정 및 심사분야 전문관을 활성화하여 기업상담관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기업상담전문관 제도를 신속히 도입,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기업상담관의 역할을 참고로 하여 현행 전문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며 선발인원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38) U.S. CBP, "Response to the Office of Inspector General Draft Letter Report Entitled, "Management of CBP Revenue Analysis Functions," 2009.1.6.

39) DHS OIG, "Management of CBP Revenue Analysis Functions," 2009.2, p.4.

〈표 4-1〉 전문관 선발계획 인원 및 선발 현황(2008.12. 현재, 단위 : 명)

전문분야	목표인원	선발인원
감 정	203명(50%)	56명
심 사	93명(23%)	38명
조 사	109명(27%)	59명
계	405명	153명

자료 : 관세청 관세심사국

* 기술직 전문관 요원(해양수산직) 2명

V. 결 론

미국의 기업상담관 제도는 제한된 세관 자원하에서 효과적으로 기업의 법규준수도를 제고시키고 적정한 세수확보를 위해 1997년부터 도입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도를 제고시키고 세입확보에 일정한 성과를 보이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한국 관세청도 2009년 8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시행 초기부터 기업상담전문관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 발전될 수 있도록 10년 이상의 운영 경험을 가진 미국 기업상담관 제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들의 성과 및 개선사항 등을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기업상담관 제도를 통해 현재 한국 관세청이 도입한 기업상담전문관 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심사대상업체나 자율심사대상업체로 기업상담전문관 지정업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보다 많은 업체들이 세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비 전임 기업상담전문관을 지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이들 업체를 대행해 관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세사에 대한 기업상담전문관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넷째, 기업상담전문관 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기업상담전문관제도의 효과 분석 및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운영해야 한다. 다섯째, 신속히 기업상담전문관 제도가 도입,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 전문관의 역할 재조정을 통해 기업상담전문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되도록 이면 보다 많은 기업이 관세청의 지원과 조력을 받아서 법규준수도 제고 등이 이루

지고 잘못된 신고 및 납세 등으로 인한 사후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업상담관 제도의 운영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 관세청의 기업상담전문관 제도는 현재 도입 초기 단계이며 또한 심사관련 분야의 업무로 그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방법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구체적인 기업관리 방법과 관련한 발전방향의 제시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참 고 문 헌

- 관세청, “기업의 심사부담 완화를 위한 납부세액 정산제도 등 도입방안 연구”, 2008.12.
- 관세청, “최근 미국 관세행정의 정책변화 연구”, 2004.10.
- 관세청, “무역기업의 주치의, 기업상담전문관 제도 본격 시행”, 관세청 보도자료, 2009.8.20.
- 송선욱, “관세심사에 관한 개정교토협약 및 미국 심사제도의 주요내용과 한국 관세심사제도에 대한 시사점”, 「무역학회지」, 제29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4.6.
- 송선욱, “미국 관세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4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03.12.
- 엄광렬·송선욱, “선진국과 한국의 전자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5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3.12.
- COAC, “COAC Report on Account Based Processing,” 2009.5.7.
- DHS OIG, “Management of CBP Revenue Analysis Functions,” 2009.2.
- Thoma A. Cook-Rennie Alston-Kelly Raia, Mastering Import & Export Management, AMACOM, 2004.
- U.S. CBP, “Response to the Office of Inspector General Draft Letter Report Entitled, ”Management of CBP Revenue Analysis Functions“,” 2009.1.6.
- U.S. CBP, Account Management Program (www.cbp.gov), 2008.6.26.
- U.S. CBP, CBP organization chart, 2009.8.19.(www.customs.gov)
- U.S. CBP, Import Specialist, 2006.4.
- U.S. CBP, ACE At a Glance Fact Sheet(www.cbp.gov), 2009.10.7.
- U.S. CBP, Performance and annual report FY2004.

U.S. CBP, Performance and annual report FY2003.

U.S. Customs Service, "ISA Program, Managing compliance in an Era of Unprecedented Trade Growth," 2003.

U.S. Customs Service, Performance and annual report FY2002.

U.S. Customs Service, Annual Report FY 2001.

U.S. Customs Services, Account Management Handbook, 2001.10.

U.S. Customs Service, Trade Compliance Risk Management Process, Glossary of Terms.

U.S. Customs Service, FY 1999 Accountability Report.

WCO, Kyoto Convention General Annex Guidelines, Chapter 6 customs control, 2. Executive summary, 1999.6.